

# 대통령 탄핵사건의 법적 평가

헌법재판소 2017. 3. 10. 2016헌나1 결정(대통령 탄핵사건)

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도13792(최서원 등 피고사건)

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도9836(대통령 피고사건)

(서울고등법원 2020. 7. 10. 선고 2019노1962)

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도2738(이재용 등 피고사건)

# 탄핵사유와 법원재판 결과

- **국정 문건 유출** → 14건 문서(해외순방일정, 체육 관련 등)만 **공무상비밀누설죄**
  - 연설문, 말씀자료 ; 인사자료, 정책보고서 등 47건 문서 중 33건 문서는 무죄
- **최서원 추천에 따른 공직자(문체부장·차관·위원) 인선** → 불기소(범죄 x)
- **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알선** → **직권남용죄(강요죄 무죄)**
- **미르, K스포츠 재단설립에 대기업들 출연 요청** → **직권남용죄(뇌물죄·강요죄 무죄)**
- **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 통한 사익추구 지원**
  - 미르재단과 7건 총 1억 3,860만 원 연구용역계약 → 불기소(범죄 x)
  - KT와 7건 총 68억 1,767만 원 광고계약 → 무죄(직권남용죄·강요죄)
  - 현대자동차그룹과 5건 총 9억 1,807만 원 광고계약 → 무죄(직권남용죄·강요죄)
- **최서원의 더블루케이 통한 사익추구 지원**
  - K스포츠와 업무협약 체결 사업운영 담당 → 불기소(범죄 x)
  - **GKL에 장애인펜싱팀 창단케 하고 그 선수 Agent계약** → **직권남용죄(강요죄 무죄)**
  - 포스코그룹에 펜싱팀 창단케 하고 그 운영 맡기로 합의 → 무죄(직권남용죄·강요죄)
  - 문체부 설치 광역 거점 스포츠club의 운영주체 K스포츠 경영자문 → 불기소(범죄 x)
  - **K스포츠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70억 원을 롯데그룹이 송금케 함** → 제3자뇌물수수죄·직권남용죄(강요죄 무죄)

# 탄핵사건의 법적 평가

- 국회의 경솔한 탄핵소추 ~ 불충분한 사실조사
  - 기관보고 및 청문회 2회뿐, 법사위 조사회부나 토론 없이 소추의결(검찰수사중, 특검 미개시)
  - 소추사유 중 생명권 보호의무위반(세월호 관련), KD코퍼레이션 관련 뇌물죄는 탄핵재판 시 각각
- 탄핵재판의 졸속처리
  - 불과 3개월만에 파면 결정(↔심판기간 180일, 동일사유 형사재판 진행 중 심판절차 정지 가능)
  - 중대한 헌법·법률위반 ~ **최서원의 사익추구**를 도와 **구속력 있는 (강요)행위**로 기업의 재산권·경영자유, 공익실현의무 침해(공무원비밀엄수의무 위배, 대의민주제·법치주의 훼손) → 전제되는 **사실관계(범죄구성)** 확정 필요 → 법원재판에서 **강요죄 무죄**, 재단설립 관련 뇌물죄 등 무죄
- 탄핵사유의 부당성
  - 직권남용, 제3자뇌물수수죄의 **부정한 청탁**은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몰랐으면 불성립
  - 대통령은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몰랐다고 주장
  - 헌재결정
    - “대통령이 플레이그라운드, 더블루케이, KD코퍼레이션이 **최서원과 관계있는 회사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**,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에 해당” 판시는 최서원의 사익추구 목적을 전제한 남용 개념 및 탄핵사유와 모순
    - 검찰·특검 등 조사에 불응한 점을 헌법수호의지 결여로 지적 ↔ 무죄추정원칙, 피의자 진술거부권과 모순

# 특검수사와 법원재판 결과

- 삼성전자의 최서원 딸 승마 지원 → 뇌물수수죄 ↔ 뇌물공여·업무상횡령죄
  - 2015. 7. 25. 및 2016. 2. 15. 각 단독면담 ~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승마단 지원 요청
  - 2015. 8. 26. 코어스포츠와 승마선수단 지원 용역계약 → 용역대금 36억 3,484만 원 지급
  - 최서원에게 선수인 딸 승마용 말 3필(34억 1,797만원) 및 선수단 차량 4대 무상사용이익 제공
- 삼성전자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→ 제3자뇌물수수·직권남용죄  
↔ 제3자뇌물교부·업무상횡령죄
  - 위 각 단독면담 ~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메달리스트 설립 아동육성 단체에 후원 요청
  - 2015. 10. 2. 및 2016. 3. 3.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 2,800만 원 지급
- SK그룹의 가이드러너 지원 → 제3자뇌물요구죄
  - 2016. 2. 16. 단독면담 ~ 대통령이 SK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의 시각장애인 경기보조 지원 요청
  - K스포츠는 가이드러너 학교설립자금,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비 등 총 89억 원 요청 → 거절
-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강요 ~ 최서원 부탁에 따라 2016. 1. 이00 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  
⇒ 위 각 범행은 대통령과 최서원 등 공모
- CJ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~ 2013. 7. 이00 부회장 경영퇴진 요구 → 불응
- 문체부 노00 사직요구 직권남용 ~ 2016. 5. 국립중앙박물관 교류단장 사직 요구

# 롯데그룹의 하남 체육시설 지원(제3자뇌물죄)

- 부정한 청탁 ~ 직무집행 대가로 시설건립자금 70억원 지원 → 묵시적 부정청탁
  - 직무집행 ~ 면세점 신규특허방안의 조속추진 및 월드타워 재취득 관련 대통령의 직무집행
- 묵시적 부정청탁 인정 근거
  - 2016. 3. 14. 단독면담 직후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먼저 연락한 점 → 면세점 문제 대화 추론  
↔ 대통령은 그룹차원에서 스포츠산업에 관심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(당사자 진술)
  -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재취득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공통의 인식
  - 롯데그룹은 특허재승인 탈락에 따른 고용문제, 호텔롯데 상장 등 문제로 신규특허 받을 필요
-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신규 취득은 거의 확정적 → 청탁할 필요 없었음
  - 2015. 11. 롯데그룹 월드타워 및 SK그룹의 워커히의 면세점 특허재승인 탈락 후 투자낭비, 고용 문제 및 국내관광 위축 우려에 따른 비난 여론 비등 → 국가경제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
  - 대통령은 2016. 1. 안종범에게 신규특허 추가발급 신속검토 지시 → 청와대, 기획재정부에 지시
  - 관세청도 2016. 2. 18. 시내면세점 추가 제도개선방안 마련하고 2개월 심사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2016. 9.까지 사업자선정 완료하는 내용의 현안보고 → 롯데그룹도 알고 있었음
  - 국내 면세점 시장점유율 50%로 매출액 1위인 롯데면세점의 신규취득은 예상되는 상황
  - 실제로 관세청은 2016. 4. 29. 4개 면세점 추가 발표 → 롯데그룹 신청 → 2016. 12. 17. 취득
  - K스포츠는 2016. 5. 25. ~ 5. 31. 송금받은 70억원을 대통령 지시로 10여일 만에 롯데에 반환
- 대통령의 최서원 사익추구 인식 증거 없음 → 대가관계 x → 묵시적 부정청탁 x

# 직권남용 I

- 의의 ~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→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 방해(결과발생 필요)
- 보호법익 ~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+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
- 직권남용 ~ 일반적 직무권한 사항에 관해 (형식적·외형적으로는) 그 직권행사의 모습으로 실질적·구체적으로는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
  - 판단요소 ~ 직권부여 목적에 따른 것인지, 필요성·상당성 있는지, 법령상 요건에 따른 것인지
  - 판단기준 ~ 공익 명분 직권행사 → 대통령 등 공무원의 최서원 사익추구 인식 여부
- KD코퍼레이션 원동기용 흡착제의 현대·기아자동차 납품 알선
  - 대통령은 "중소기업 KD코퍼레이션이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니 활용 가능하면 채택해 주었으면 좋겠다"고 권유 → 통상의 입찰절차 없이 10억 5,991만 원 상당 납품
  - 법원은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적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판시
    - ↔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(5천만 원 금품 수수) 모르고 중소기업 지원 의사로 권유 → 남용 x
    - ↔ 현대·기아자동차의 납품필요에 관한 경영판단, 납품으로 인한 손익 조사 미진 → 인과관계 x
- 미르, K스포츠 재단설립에 대기업들 출연 요청
  - 대통령은 문화융성과 스포츠발전 위해 대기업의 지원 당부 ← 대표적 정책공약
  - 법원은 기업들이 출연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점,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기회 없이 대통령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출연하게 된 점, 재단운영 참여기회 없었던 점, 최서원이 임원 선임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도록 허용한 점을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판시
    - ↔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(재단사업 관여 등 용역제공 플레이그라운드, 더블루케이의 실질적 운영주) 모르고 문화융성과 스포츠발전 목적으로 대기업의 협력을 받은 것 → 남용 x

# 직권남용 II

## ▪ GKL에 장애인펜싱팀 창단케 하고 그 선수 Agent계약

- 1차 ~ 대통령은 정호성을 통한 최서원의 부탁에 따라 안종범에게 "GKL이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업체로 더블루케이를 소개해 주라"고 당부(당시 최서원이 실질적 운영주임은 不知) → 안종범은 GKL 대표에게 스포츠단 창단 권고, 더블루케이 대표 소개 → 연 80억 원 규모의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의 창단, 더블루케이의 업무대행 용역계약 제의 → GKL이 거절
  - 2차 ~ 문체부 2차관(김종)은 최서원 부탁에 따라 GKL에 규모 줄인 조정안 제시, 요청공문 발송 → 장애인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케이가 소속선수 3명의 Agent 맡는 3자계약(6천만 원 예산)
  - 1차 관여 대통령 및 안종범을 2차의 공모범으로 판시함은 증거 없이 공모사실을 인정한 것임
  - 1차 사안은 가사 직권남용이라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규정 없으므로 무죄
  - 법원은 대통령이 더블루케이의 계약수행 역량을 확인하지 않고 최서원의 부탁에 따라 공기업 GKL에 소개하였음을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판시
- ↔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(더블루케이의 실질적 운영주) 모르고 청탁한 것 → 남용?

## ▪ 롯데그룹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

- 법원은 대통령이 롯데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 사업 지원을 요구했음을 전제로, 그 요구가 최서원의 부탁에 따른 것인 점, 롯데그룹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70억 원 지원이 비자발적인 점을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판시

↔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(더블루케이의 실질적 운영주) 모르고 공익재단의 공익목적 사업에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한 것(강요죄는 무죄) → 남용 x (법원은 대통령이 더블루케이를 지속적으로 챙긴 점, 최서원과의 관계에 비추어 실질적 운영주임을 알았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을 뿐임)

# 공무상비밀누설

- 의의 ~ 공무원(공무원이었던 자)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
- 보호법익 ~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에 의해 위태롭게 되는 국가기능(비밀 자체 x)
- 비밀 개념
  - 통설 ~ 實質秘 중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된 비밀로 제한(形式秘)
  - 판례 ~ 實質秘(정부·공무소·국민의 객관적·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 중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) → 누설 개념 제한 필요
  - 사안 ~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, 청와대 비서진 교체내용,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,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방안, K스포츠 및 더블루케이의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개편 방안, 로잔 국제 스포츠 협력거점 구축 추진현황 등의 문건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
- 누설 개념
  - 비밀내용을 알고 있는 자나 직무수행 위해 필요한 보조자에게 알리는 것은 불포함
  - 사안 ~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연설문 표현 등에 조언을 받아왔고, 특히 스포츠 분야 조언을 받아온 보조자인 최서원에게 직무수행에 조언을 받기 위해 문건을 건넨 것 → '누설'로 볼 수 없거나 비밀누설의 고의 인정 불가

끝

